

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

2019. 10. 17. 제정

2022. 1. 20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센터는 아시아, 아프리카, 라틴아메리카 등 비서구/포스트식민세계의 관점에서 젠더, 인종, 계급의 역학 등 여성 관련 전반의 영역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여, 역사성 및 지역성에 기반 한 여성주의 지식의 장을 열어가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<개정 2022.1.20.>
2. 자료의 수집·정리·보관·편찬·간행
3.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4.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사업
5. 국내 및 국제 타 기관과 교류 및 협력사업
6. Asian Journal of Women's Studies의 발간
7.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
제3조(소장·부소장) 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
- ② 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.
- 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조직) ① 센터에 연구부, 편찬부, 교육부 및 행정실을 둔다.

- ② 연구부는 학술연구, 학술행사, 학술교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③ 편찬부는 학술지 발간 및 연구결과물, 자료집 등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④ 교육부는 교육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⑤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제5조(부장)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.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6조(연구위원 등) ① 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0.12.10.>
-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-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(연구원 등) ① 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8조(행정인력) ① 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시아여성학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소장,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사업 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제11조(경비 및 현금출납) ① 센터의 경비는 센터 기금, 찬조금, 보조금 및 기타 센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

부칙(2019. 10. 17. 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 12. 10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아시아여성학센터 규정

부칙(2022. 1. 20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